

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(제14조제7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가. 시내전화 서비스
 - 나. 시외전화 서비스
 - 다. 이동전화 서비스
 - 라. 개인휴대통신 서비스
 - 마. 아이엠티이천(IMT-2000) 서비스
 - 바.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
2.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